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ignity and justice for all of us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인권은 인류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 정책토론: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일시 2008. 10. 7(화) 14:00~16:3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정책토론: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진행순서

시간	순서	내용	소개
14:00 ~ 14:05	개회	토론회 개회 안내	정책총괄팀장
14:05 ~ 14:10	인사말	인사말	안경환 위원장 (국가인권위 위원장)
14:10 ~ 14:15	참석자 소개	사회	유남영 위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4:15 ~ 14:35	주제 발표 (20분)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이승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14:35 ~ 14:45	지정토론 I (각 10분)	언론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춘식 박사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 서울대 객원교수)
14:45 ~ 14:55			장호순 교수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14:55 ~ 15:05	지정토론 II (각10분)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안미영 변호사 (시변 서울)
15:05 ~ 15:15			금태섭 변호사 (민변 추천)
15:15 ~ 15:25	휴 식		
15:25 ~ 15:35	지정토론 III (각10분)	언론관련 단체의 입장	김정대 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실장)
15:35 ~ 16:00	종합토론		
16:00	정리 및 폐회		

목 차

❖ 주제발표

-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이 승 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1

❖ 지정토론 I

- 언론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 춘 식 박사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 서울대 객원교수) 43
장 호 순 교수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55

❖ 지정토론 II

-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안 미 영 변호사 (시변 추천) 63
금 태 섭 변호사 (민변 추천) 69

❖ 지정토론 III

-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김 정 대 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실장) 79

주제발표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이 승 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이 승 선 교수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1. 문제제기

<시위를 촉발시킨 MBC PD수첩의 보도가 왜곡 과장 보도로 밝혀지면서 촛불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갔다>. 9월 초 서울의 큰 신문에 실린 칼럼의 한 문장이다. ‘촛불의 열기가 순식간에 식었다’는 묘사에 대하여 혹자는 ‘촛불의 열기가 3개월여씩이나 지속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맞받을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한 평가는 보고 읽는 이의 주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차치하고, 다만 문장의 앞 부분에 담은 단정적 표현은 현재 대한민국의 ‘법령체계’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는 사안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하나는 <시위를 촉발시킨 PD수첩> 부분이다. 시변 등의 단체는 PD수첩이 시위를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24억 6천9백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하나는 <PD수첩의 보도가 왜곡 과장>이라는 표현 부분인데, 세 갈래의 대응이 법령에 기반해 전개되었다. 첫째는 농식품부가 PD수첩의 왜곡 과장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 보도 신청을 하였고 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보도문’을 방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MBC가 불복한 이 사건은 법원으로 옮겨져 과장 왜곡 부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둘째는 PD수첩의 왜곡 과장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에 대해 ‘시청자 사과’라는 제재결정을 내렸고 해당 방송사는 이를 수용해 사과방송을 실시했다. 셋째는 이 프로그램의 왜곡 과장 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전 농식품장관 등이 MBC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형사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법원·방송통신심의위원회·검찰의 ‘법령절차’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가 ‘과장·왜곡·허위’라는 점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촛불시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물리적 피해 주장 문제는 촛불시위가 PD수첩보도로 인해

인과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기존 법원의 유사한 판례의 경향이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논란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PD수첩 보도의 과장·왜곡·허위 여부에 대해서도 여러 법령기관들과 이해관계자 특히 방송사 제작진은 서로 극심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해법도 크게 다르다. 과장·왜곡·허위적인 보도이므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측과 과장·왜곡·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다소간의 과장과 왜곡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는 진영도 있다.

이 글은 PD수첩에 대한 여러 법령절차 중에서도 특히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권 발동과 관련된 쟁점을, 언론의 자유의 의미와 한계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건의 개요¹⁾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 한국과 미국간에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이 열려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그 해 10월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나 수입 쇠고기에서 ‘뺏조각’이 발견되었다. 2007년 8월 1일, 미국산 쇠고기에 ‘척추뼈’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검역중단조치를 취했다.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아예 ‘척추뼈’의 수입을 허용하라면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제의했다. 8월 27일 정부는 작업장 종업원의 단순한 실수로 뼈조각이 살코기에 포함됐다는 미국측 해명을 수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10월 5일 다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1) ‘사건개요’ 부분은 한국언론학회등이 주최한 <진단과 대안 10: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재구성했다. 이전 발표논문은 7월 초까지 전개된 상황을 다뤘는데 이 논문은 7월 5일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PD수첩’ 사건의 개요를 추가했다. 사건의 개요를 구성하는데 사용한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의 KINDS 기사검색과 <미디어오늘>, <PD저널>, <조선일보>, <중앙일보>, MBC PD수첩, 각급 법원 사이트 등에서 획득하였다. 또 농식품부홈페이지, 관계자들의 인터넷카페, 미국CDC홈페이지 등 필요한 곳은 직접 접속해서 관련 자료를 얻었다. 일부 언론매체에만 사건의 개요내용이 소개된 경우, 관련 언론의 기사자료를 출처표기하였다.

수입한 미국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2월 17일 미국 농무부는 미국의 한 육류업체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냉동육 6만 5천톤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미국 사상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로서 이 업체는 다운너 소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국 전역의 학교급식과 일부 패스트푸드 업체에 납품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중단된 후 6개월이 흘렀다. 청와대는 4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하였다.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4월 10일, 농식품부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날인 4월 11일부터 미국쇠고기 위생조건재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30개월 미만의 ‘뼈붙은 쇠고기’는 물론 미국이 동물성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특정 부위를 제외하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협상결과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4월 29일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방영하였다.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자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 프로그램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었다고 논평하였다. PD수첩은 ‘이달의 PD상’과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조정 신청을 했다.²⁾ 농식품부의 조정 신청 이유는 ①확인되지 않

2) 농식품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4.29일 방영된 MBC <PD수첩>이 “광우병에 위험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연구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설에 의존하여 그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한편, ○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협상대표단을 비롯한 전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는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한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를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 농식품부는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조정신청 취지에서 <PD수첩>이 도입부에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도축’ 동영상을 소개한 후 곧바로 인간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숨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례를 무려 14분이 넘도록 다루면서 ○ 두 가지 동영상 방영 직후 스튜디오에서 진행자들이 동영상 속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미국 여성의 죽음도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태도를 취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시청자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과도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였다. * ○○○ PD : “○○○ PD,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 도축되기 전 그런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씨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면서요.” ○ 아울러, 중재위에 대리인으로 참석한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중재위원회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온 인터뷰에서 딸의 사인을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PD수첩>은 이를 ‘vCJD’로 방송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mifaff.korea.kr/mifaff/jsp/mifaff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296068)

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가설에 의존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각 ②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협상 대표단을 포함한 전 농림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였다. PD수첩이 ‘시청자들에게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전달’했다면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① 진행자들이 휴메인 소사이터티의 ‘주저앉은 소’ 방영직후 동영상 속의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 것 ②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죽음도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는 보도태도를 취한 것 ③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온 인터뷰에서 딸의 사인을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PD수첩은 이를 ‘vCJD’로 방송했다는 것이였다.³⁾ 언론중재위원회는 5월 15일 직권조정 결정을 내려 ‘보도문’을 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고 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PD수첩측은 이 직권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법상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⁴⁾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조정 결정한 ‘보도문’은 다음과 같다.

“본 방송이 지난 4월29일 방영한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해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됐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⁵⁾

&currPage=7&_category=).

3) (http://mifaff.korea.kr/mifaff/jsp/mifaff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296068&currPage=7&_category=).

4)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6월 30일 첫 심리를 열었다. 양측은 이날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했는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단정했는지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는지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조치(수입중단)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도했는지 ▲‘한국인이 광우병 소 섭취시 발병 가능성 94%’라고 보도한 내용이 허위인지 ▲라면수프·화장품·의약품 등을 통한 발병 가능성을 언급한 게 허위인지 여부 등 7가지를 쟁점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재판 진행과정에서 공방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신문, 2008.7.1.8면).

5) 자료의 출처는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의 <별지4>자료임.

미국 CDC는 6월 12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농식품부는 6월 20일 PD수첩이 농식품부장관과 정부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찰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5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7월 2일 MBC에 PD수첩방송관련 원본테이프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7월 4일 MBC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PD수첩 4월 29일 방영편의 기초 취재 자료에 활용된 다운너 소 관련 동영상과 원어 대본, 번역본 일체 등 10종류이다.⁶⁾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과 농식품부의 검찰수사의뢰, 검찰의 전담팀구성 와중에 PD수첩에 프리랜서 번역작가로 참여한 정지민씨의 글이 PD수첩 게시판에 게시되었다. 정지민씨는 이 글에서 ①소위 다운너 소를 광우병으로 직접 연결시키지 말 것을 여러차례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진행자의 말 실수 뿐만 아니라 맥락상 연결되었고 ② 빈슨 사인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 등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진의 제작 의도 및 편집 ‘성향’ 내지 ‘목적’이 강조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⁷⁾ 정씨의 글은 신문매체의 여러 지면에 스트레이트와 사설로 크게 다뤄졌다.

PD수첩측은 6월 26일 ‘PD수첩 영어번역자 J씨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이란 글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에서 PD수첩측은 ① 6월 24일 방송된 ‘PD수첩 오보 논란의 진실’편에서 ‘영어번역에 신경쓰겠다’고 말한 것은 번역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더욱더 신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자성과 다짐이다 ② J씨는 영어 취재물 870분 중에서 약 1/3과 문서 37장중 12장을 번역했고 방송용으로 최종편집된 프로그램 45분 중 약 12분에 대해 ‘영어감수’했다 ③ 다운너 소를 광우병과 연결시키는 것이 왜곡이라는 것을 제작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세가 주저앉는 것이고 방송에서 보인 다운너 소들은 이미 도축되어 광우병 감염 여부는 알수도 없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언론들도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 쇠고기 리콜사태를 보도하면서

(http://mifaff.korea.kr/mifaff/jsp/mifaff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b_sec_1&_id=155296068&currPage=7&_category=).

6)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수사의 5대 초점은 ① ‘광우병소 도살’ 오역자막 경위 ② ‘다운너=광우병’ 직간접적 보도 ③ 한국인 발병 가능성 높다는 보도 ④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 보도 ⑤ 라면 수프가 광우병 유발 보도 등이다 (동아일보, 7.2.5면).

7)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작성일: 2008.06.25 09:18, 번호:183323)

이미 광우병과 다운너 소를 연결시켰다⁸⁾ ④ J씨 역시 PD수첩 시청자게시판에 쓴 글에서⁹⁾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vCJD와 CJD를 혼동해서 말했고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며 ‘PD수첩의 해명이 정당하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¹⁰⁾ 또 6월 27일 ‘일부 언론의 6월 27일자 PD수첩 왜곡 주장에 대한 입장’을 게시판에 공지했다. PD수첩측은 일부 언론의 왜곡 주장을 ① ‘다운너 소 장면을 동물학대를 고발하기 위한 영상이며 광우병 소처럼 묘사하는 것은 왜곡이다’ ② ‘어머니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해 위 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지만 배제했다’ ③ ‘현지 미국 시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은 방송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이를 반박했다.¹¹⁾¹²⁾ 정지민씨는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 6월 30일 그 동안 PD수첩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자신의 주장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이 반박한 것을 재

8) PD수첩측이 소개한 일부 언론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조선(2008.2.19) : 미 사상최대 쇠고기 리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2/19/2008021900372.html], [동아(2008.2.19) : 미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 ... ‘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2190080>], [중앙(2008.2.19) : 미국 쇠고기 6만 4천 톤 리콜 <http://article.joins.com/article/print.asp?ctg=13&AID=3045371>].

9)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작성일: 2008.06.25 14:50, 번호:185673)

10)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작성일: 2008.06.26 08:37, 번호:188601)

11)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작성일 : 2008.06.27 22:09, 번호:199473)

12) PD수첩은 7월 15일 <PD수첩은 진실을 왜곡했는가?>편에서 ‘PD수첩이 아레사 빈슨 어머니한테 유도 질문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7월7일자 『검찰, PD수첩 취재자로 왜 집착하나』 라는 기사에는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모친을 상대로 유도질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부분이 나온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빈슨의 모친이 다른 미국 인터뷰에서는 vCJD(인간광우병)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CJD와 vCJD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반 CJD 환자임을 PD수첩이 알면서도 인간광우병 환자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분을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WVEC-TV(ABC 방송의 가맹사로 버지니아 주 소재)의 ‘13News’란 프로그램 4.7일자 방송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이는 제작진이 처음 공개하는 자료임) Reporter : The family tells us Aretha has the variant CJD which is contracted from eating meat from an infected animal. (기자 : 가족은 아레사가 감염된 동물의 고기를 먹었을 때 걸리는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Mom: he told us she has something similar to mad cow disease. Oh... I just couldn't believe it. (어머니int :그(의사)는 제 딸이 광우병과 비슷한 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동영상 뉴스에 나오는 Wayne Carter라는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에는 ‘Mrs. Vincent took pictures of her daughter being led to the hospital, where she says doctors diagnosed her with variant CJD.(빈슨씨는 딸이 병원으로 가는 동안 사진을 찍었다. 그녀는 그 병원 의사가 variant CJD(vCJD 인간광우병)로 진단했다고 말했다)라는 대목이 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어머니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vCJD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http://www.imbc.com/cms/CUCNT240/TV0000000075734.html>

반박하는 글 등을 올렸다. 정지민씨는 이 카페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PD수첩의 광우병편이 왜곡방송이냐 아니냐 문제’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① ‘피디수첩이 방송에 반영한 자료가 그 내용을 뒷받침했느냐 아니냐’, ② ‘방송내용을 뒷받침하지 않는 자료가 여러 번 왜곡되어 사용되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랬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¹³⁾

7월 11일 검찰은 제작진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PD수첩측은 검찰의 방송원본 테이프 제출요구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자료 제출행위는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법적인 의무가 없으면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5월 1일자로 공식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6일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제10조(회의록)는 회의록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방통심의위 회의 공개등에 관한 규칙 제6조(회의록작성)는 비공개회의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심의위는 회의록은 물론, 발언요지조차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당초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MBC측에 지난 4월29일 방영분에 대한 20가지 해명을 요구하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개자료 제출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40여쪽 분량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표한 검찰은 ‘다우너 소 동영상에 광우병 의심소로 각인한 것’ ‘Dairy cow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한 것’ ‘진행자의 말실수’ ‘다우너소의 도축과정’ ‘쇠고기 리콜’ ‘CNN 여론조사 인용경위’ ‘아레사 빈슨의 사인’ ‘미국언론 인용’ ‘빈슨 모친 인터뷰’ ‘MRI 결과 자막처리’ ‘부검 관련 보도자료 오보’ 등을 방영한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¹⁴⁾¹⁵⁾

13) http://cafe.naver.com/karamasov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1

14)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재 구성함.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14> (검색일 2008.10.5); <동아일보>, 2008.7.30.1면.

15) 수사팀은 PD수첩측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선 시청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영상으로 방영됐던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에 대해 검찰은 MBC 측이 인용했던 동물보호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터’의 동영상 전체를 분석했다. 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엔 다우너 소 동영상 원본 자료가 그대로 게시돼 있다. 검찰은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나온 자료도 입수했다. PD수첩이 검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증거로 일부 제출한 휴메인 소사이어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인터뷰 내용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이 프로그램의 번역에 참여한 사

● 수사팀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다우너 소 동영상과 관련해 “다우너 소의 원인이 59가지 지임에도 <PD수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과 “‘Dairy cow’를 젖소가 아니라 ‘심지어 이런 소’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가 곧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해 동물 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영양 결핍 등 59가지의 다우너 소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광우병 소만 언급했다”는 것이다. ● 수사팀은 “PD수첩이 ‘chaged with animal cruelty’(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를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번역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했다. ● 수사팀은 송일준 앵커가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을 “말실수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대본을 봐야만 실수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므로 해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PD수첩 진행자가 다우너 소 동영상을 상기시키며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언급한 것 등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발언인지는 방송 대본을 확인해 봐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내용이 ‘다우너소 동영상’→‘마이클 그레거 인터뷰’→‘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마이클 헨슨 인터뷰’에 이어 송일준 앵커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수사팀은 “일련의 편집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만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다우너소→광우병 소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고 의심했다. ● 다우너 소가 1차 검사 이후 쓰러지면 수의사가 재검사한다는 걸 CNN 뉴스는 방영했으나 PD수첩은 재검사 부분을 생략한 점, 이 동영상 공개 이후 실시된 최대 쇠고기 리콜이 2급이었다는 점을 생략한 점도 잘못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 검찰은 올 4월 22세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라고 말한 부분을 PD수첩이 vCJD(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한 것은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수사팀은 당시 미국언론들이 빈슨의 사인을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CJD, vCJD, 기타 뇌산소 부족 등 다양하게 제기했으나 PD수첩은 위절제 수술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편향보도했다고 주장했다. ● 수사팀은 또 PD수첩이 △빈슨 어머니 인터뷰 중 MRI 결과를 CJD라고 언급한 부분을 생략한 이유 △어머니의 발언 중 ‘couil possible have’(결렸을지도 모르는)를 ‘결렸던’으로 단정 보도했다는 지적 △WAVY TV의 ‘doctor suspect’를 ‘의사들은…결렸다고 합니다’라고 자막처리

람들이 그레거 박사 인터뷰를 번역했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실제 인터뷰 내용과 비교 분석했다. 또 PD수첩이 미국의 여러 언론보도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각시켰던 것처럼 검찰도 아레사 빈슨 및 광우병 관련 미국의 언론보도를 샅샅이 뒤졌다. 검찰은 PD수첩이 인용한 보도를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리콜 조치 등을 보도한 CNN 뉴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보도한 WVEC.COM 기사, WAVY TV 방송, 폭스뉴스 기사, Hamptonroads.com 기사 등을 찾아내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 또 국내의 광우병 관련 논문과 미 농무부 및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자료를 모았고, 광우병 전문가의 견해도 들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모은 자료로 판단할 때 MBC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한 의혹이 짙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 2008.7.30.4면).

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 △어머니가 MRI 결과를 CJD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vCJD로 자막 처리하고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vCJD 가능성만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했다. CJD와 vCJD를 구별해 벽에 적어 놓을 정도로 용어를 혼동하지 않았던 빈슨의 어머니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딸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CJD로 진단받았다”라고 언급했으며, 빈슨의 사망을 전후해 미국 언론은 위(胃) 절제수술의 후유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PD수첩은 유독 vCJD로 사인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 수사팀은 ‘포츠머스 보건당국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vCJD는 쇠고기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만 부각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 ‘0.1g의 위험물질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PD수첩의 보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과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부분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면서 MBC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발표내용의 상당 부분이 농식품부와 주류 신문의 주장을 ‘받아쓰기’한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비판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혹은 방송을 길들이기 위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¹⁶⁾ 한편, PD수첩측은

16) 한국PD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발표는 ‘자료요청’이라고 하지만 제작진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사실상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발표 자료는 그동안 조·중·동이 수없이 <PD수첩>을 흠집내왔던 주장을 정리하고 보충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고, 기껏해야 <PD수첩>의 ‘번역’을 맡았다는 정 모씨의 주장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한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성명에서 “검찰 발표는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이 앵무새처럼 ‘PD수첩이 왜곡했다’는 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PD수첩>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수사를 강행했고 언론플레이를 위해 중간수사발표까지 자처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정권의 의도에 충실히 부역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0>). 민주당은 ‘정치적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PD수첩에 대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지적을 불식시킬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며 요란을 떨더니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편집한 듯한 주장만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자유선진당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후속보도와 전문가 견해 등을 통해 교정되어야지 검찰의 무리한 개입을 통해 국가형벌권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의혹 지피기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고 평가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밥은 안 짓고 술에 물만 넣어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는 의혹 지피기 수사에 불과했다. 검찰의 과잉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를 거론하며 “검찰은 PD수첩의 보도내용이 대부분 왜곡이라고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다른 언론들도 지난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조중동도 사실을 왜곡한 셈이고, PD수첩처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창조한국당도 “검찰이 PD수첩 죽이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지혜 창조한국당 부대변인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면서까지 언론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PD수첩>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대변인은 “이제 PD수첩이 국민께 고백할 차례이다. 진실을 어떻게 왜곡했고, 사실을 어떻게 호도했는지 PD수첩은 밝혀야 한다. 이것이 ‘PD수첩’에

8월 1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72쪽에 달하는 <검찰 발표에 대한 PD수첩의 입장> 자료를 공개하면서 PD수첩 측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해명자료를 제출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아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직접 해명할 필요가 없다’ 며 일축했다. 언론자유의 측면을 고려할 때, 직접 검찰에 나가 해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료 및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 다우너 소가 문제된 것은 광우병 위험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도 명백하게 광우병 때문에 다우너 소 도축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뿐 아니라 CNN·워싱턴포스트 등 수많은 보도들이 모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한 것이다. 지난 5월 2일 농식품부도 일어서지 못하는 소를 광우병 고위험군 소라고 명시한 점과 지난 9일 우리나라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우너 소는 죽인 뒤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다우너 소와 광우병 위험성을 연결시킨 <PD수첩> 보도는 정당하다. ● 언론은 1%의 위험만 있어도 그 위험을 충분히 고지할 의무가 있고 사전 예방의 원칙에 따라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문제제기한 것이다. ● 미국이 광우병 통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검찰이 지적했으나 ‘<PD수첩>은 미국에 단계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을 문제제기한 것이 핵심’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인 지난 6월 26일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쇠고기가 발견돼 또 한 차례 쇠고기 리콜 사태가 있었다. 시스템이 있는 것과 그것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별개 문제다. 검찰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강조하는 농식품부의 기존 입장을 옹호하며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 MM형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농식품부 전문가 회의에서도 나온 내용이고, 지난해까지 정부가 가진 공식입장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딱 하나의 이유로 이제 와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사 프로그램은 한 주제를 가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시사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농식품부가 청구한 ‘정정 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주저

게 던져진 책임이요, 의무”라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018>).

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166>;
<http://www.pdjour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91>

얇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 정정보도를 인용하고, ‘아래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이긴 하지만 PD수첩측의 후속보도로 정정·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의 특정위험물질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원고의 신뢰·명예훼손, 올바른 여론 형성 차원에서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보도내용들은 평가 또는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⁸⁾¹⁹⁾

-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사실, 경기도에서 매년 600여 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그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는 사실, 미국에서 19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이 사건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의 후속 방송만으로 충분히 정정보도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하라
- 아래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것이나 피고의 후속보도로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일의적인 기준이 있기 보다는 나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월령을 구분하지 않고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그 중 5가지가 수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보도를 곧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할 언론사로서는 다양한 분류기준 중에서 어느 것에 의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였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국제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 있어서는 편

18)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19)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또 반론보도 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제16조).

도와 회장원위부 등 2가지 만이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2배 정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으로서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종전에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등뼈 같은 특정위험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피고로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하여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위 보도내용은 그 같은 가능성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원고는 협상을 앞두고 2007년경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현지 도축장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으나 피고는 우리 정부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았는지, 알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판단으로는 미국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임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서 원고의 협상준비나 능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보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보도는 의견표명 또는 평가에 해당하여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²⁰⁾ ● 언론사로서 피고는 이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이나 평가도 보도할 수 있을 것이나 정정·반론보도를 보도하는 기회에 그에 관한 반론이나 비판적인 견해 등을 방송한다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 정정·반론보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피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작위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고, 정정·반론보도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간접강제청구는 이유없다

MBC측은 8월21일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8월 1일 법원의 PD수첩에 대한 일부 정정반론보도 판결에 대해 언론의 공익적 보도 목적을 고려한 흔적이 없는, "객관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면서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주요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밑줄친 부분은 필자가 표기. 이 부분은 PD수첩팀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고 보여 필자가 밑줄 표기함.

●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다우너 동영상 부분에 대해 “<PD수첩>의 보도는 허위이다”라고 판단했으나 <PD수첩>이 방송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가 도축되고 있는 미국의 축산 시스템과 부실한 정부의 협상과정이었지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와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과장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언론의 입장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상황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원에 되묻고자 한다.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이 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 재판부가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것도 역시 석연치 않다. 무엇보다 <PD수첩>이 이미 후속보도를 통해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라고 정정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다”라고 판결했다. <PD수첩>이 정정보도를 했던 것은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광우병 발병확률이 정확히 94%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었지, MM형 유전자가 광우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백번 양보해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보도가 왜 허위라는 것인가? MM형 유전자와 광우병 발병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정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무슨 근거로 MM형 관련 보도 자체를 허위로 몰고 있는 것인가? ● 법원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과 관련해 후속보도로 정정방송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기각판정을 내렸지만 판결문을 보면 “지난 6월 12일 미국 프리온 질병 병리학 감시센터가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이 부분 보도 역시 허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PD수첩>이 최초 방송할 당시 빈슨의 사망원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미국의 언론도 빈슨의 사인이 인간 광우병일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빈슨의 사인 가능성으로 인간광우병을 언급하는 것이 어떻게 허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상황적 증거가 뚜렷한 사실을 보도했던 사안에 대해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당시 보도가 허위였다고 몰아가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한편, MBC는 8월 12일 PD수첩 방송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8월 11일 보낸 PD수첩에 대한 ‘사과명령’ 최종 결정문과 관련해, 12일 오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사과방송 수용’과 제작진 징계인사를 결정했다. MBC 노조조합원들이 방송센터 5층 뉴스센터와 2층 주조정실로 나눠 사과방송 보도를 막기 위해 실력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MBC는 자회사인 MBC플러스를 통해 우회 송출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사과’ 방송을

했다.²¹⁾ 8월 18일 검찰은 제작진 4명에 대해 피내사자 신분, 작가 3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3차 소환통보했다. MBC 노조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일로부터 한달 후인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한나라당·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소했다.

<표 1> ‘2008 PD수첩’ 관련 주요 사건 일지

일일	내용	비고
2003.12.	• 미국에서 광우병발생, 미국산쇠고기 수입 전면금지	
2006.1.9.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조건 협상시작, 13일 타결	• 30개월미만, 뼈없는 살고기만 수입
2007.10.5.	• 정부, 미쇠고기서 ‘등뼈’발견, 미쇠고기 검역전면중단	• 미 농무부, 미국사상 최대규모의 쇠고기리콜명령 (다우너 소관련, 2008.2.17)
2008.4.10.	• 농림식품부,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재개 발표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4.9)
" 4.11-18.	• 한-미 쇠고기 협상 시작 (11일), 타결 (18일)	• 이명박 대통령, 미·일방문(4.15.-4.21) • 한-미 정상회담 (캠프데이비드, 4.19일)
" 4.29.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 방통심의위 공식출범 (5.1) • 촛불문화제시작 (5.2) • PD수첩, 제98회 이달의 PD상 수상 (5.23), 한국기자협회의 이달의기자상, 특별상 수상 (6.2)
" 5.6.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에 PD수첩상대 ‘반론-정정’ 조정신청	
"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 방송	
" 5.15.	• 언론중재위원회, 농식품부의 반론-정정조정신청 직권결정	
" 6.12.	• CDC, 라레사 빈슨의 사인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결론	• NPDPC, vCJD 가능성을 배제
" 6.20.	• 농식품부, 명예훼손을 이유로 ‘PD수첩’ 검찰수사의뢰	• 농식품부장관, 정부협상단 명예훼손이유
" 6.23.	• 검찰, 농식품부가 의뢰한 사건, 형사2부에 배당	
" 6.24.	• PD수첩, “쇠고기추가협상과 PD수첩오보논란의 진실”방송	
" 6.25.	• 정지민씨, PD수첩게시판에 글게시	
" 6.26.	• 농식품부, 새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 게재 • 검찰, PD수첩 조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	
" 6.30.	• 서울남부지법, 농식품부청구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심리 • 정지민씨, ‘PD수첩’에 재반박	• 변론준비절차 (정식재판 7.15.)
" 7.1.	•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미국산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심의	• ‘PD수첩’ 4.29방송편 /5.13.방송편, 7.9. 제작진 의견청취결정키로 결정
" 7.2.	• 검찰, MBC에 ‘PD수첩’방송 원본테이프제출요구	

21) MBC는 시청자사과방송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는데 이어 시사교양국 관련 인사를 두고도 내용을 겪었다. MBC는 9월 5일, 정호식 시사교양국장을 보직해임하고 최우철 신임국장을 임명했으나 3주만에 광동국 국장으로 인사교체했다. 시사교양국은 정호식 국장이 6개월만에 보직해임되자 이를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경질인사’로 보고 이에 항의해 소속 CP들이 보직사퇴를 전명했고 일선 PD들도 ‘시사거부’ 등 강경 대응하며 반발했었다.

월일	내용	비고
"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연합회, PD수첩 검찰수사 즉각 중단 요구 • MBC 시사교양국PD, 검찰수사등 중단촉구 • 방송3사 시사프로그램작가 122명, 방통심의위의견서제출 	
" 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방통심의위에 9일예정심의 연기 요청 • MBC, 검찰의 방송원본테이프제출 요구 거부결정 	
"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PD총회,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중단 성명발표 	
" 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제작진 4명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PD수첩은 진실을 왜곡했는가?" 방영 	
"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 PD수첩에 '시청자사과'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심의위, '회의록'남기지 않음
"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PD수첩 '중간수사결과'발표 (<공개자료제출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시민단체·야당 검찰발표 비판
" 7.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남부지법, 농식품부청구 정정·반론청구사건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쟁점중 2개 정정보도, 1개 반론보도
"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측,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 반박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쪽짜리 해명자료 발표
" 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PD수첩 사과방송 (올림픽특집 뉴스테스크방송직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플러스(사회사) 통한 우회송출
" 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3차 소환통보, 제작진 4명 작가3명등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내사자신분(제작진) 및 참고인자격(작가)
" 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정정·반론보도판결에 불복, 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소가능시한
" 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노조, 국가인권위에 '검찰·한나라당·방통심의위' 제소 	
"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변등, MBC·조능희PD·송일준PD에 24억600만원손배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69명의 시민 소송참여, 1인당백만원
"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 PD수첩사건 정책토론회 개최 	

3. PD수첩 사건에 대한 신문 논조 분석

PD수첩 사건에 대한 신문의 논조를 분석한 것은, 역설적으로, 언론보도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 사건의 법적인 쟁점을 추출해 보고자 함이다.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까지 언론이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뤘는지 조망해 봄으로써,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적 논점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PD수첩 사건에 대한 신문보도는 크게 6개 시점에서 활성화되었다. 첫 번째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문 방송 직권조정결정' 시점이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선·동아·중앙일보는 각각 5월 21일자 사설을 통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언론의 기초상식이므로 '정정보도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라고 썼다. MBC와 PD수첩 제작진은 오류와 과장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신문이 지적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흑색선전'이나 다른

없는 ‘왜곡 과장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엄청난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 인터넷 광우병 ‘괴담’과 촛불집회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 나타나듯이 그러한 PD수첩의 보도내용 중에서 특히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과 관계가 없고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미국여성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들 신문이 요구하는 것은 MBC와 PD수첩 제작진의 정정보도와 사과였다.

두 번째는 번역가 정모씨가 PD수첩 게시판에 글을 남긴 시점으로 일부 신문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신문들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인터뷰내용을 오역·왜곡하고 프로그램을 날조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 신문은 게시 글 직전에 시작된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PD수첩의 프로그램 날조 왜곡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번역가 정모씨가 PD수첩의 제작목적에 따른 ‘의도적 오역’의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검찰은 방송사와 번역가 사이의 공방에서 진실을 찾아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제작진의 ‘제작 의도’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에서 밝혀진 두가지 핵심적 왜곡을 ‘제작과정에 참여한 번역자가 직접’ 밝혔다고 평가했다. 일부 신문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본질은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이고, 국가가 그런 책무를 다했느냐’인데 일부 신문과 여당이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사과> 결정을 내린 시점이다. 신문들은 방통심의위가 주저앉은 소, 아레사 빈슨의 죽음 외에도 한국인의 MM 유전자 관련 보도도 ‘허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방송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최종 판정하는 기구인 동 위원회가 PD수첩의 과장 왜곡이 매우 심각했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았다. 시청자 사과 결정이 ‘당연하다’는 평가 외에 방통심의위가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와 같은 더 엄중한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가리는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표 2> PD수첩 관련 주요 일간지 사실 및 칼럼

(- 2008.7.29. 검찰 중간수사발표전까지)

구분	사실	칼럼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파동을 흑세무민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6.27) • 홍준표 원내대표의 방송장악 기도 고백 (6.28) • 이번에는 또 ‘정보 전염병’탓인가 (7.14) • 노골화하는 정권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 (7.18) • 진실 은폐위한 ‘쇠고기 국조’인가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상대로 전쟁-정부와 보수신문의 공격 (설원태 선임기자의 미디어돌보기, 6.30) • ‘고의성’질은 PD수첩수사 (기고, 최진봉미네소타대교수, 7.1) • 광우병 뒤에 숨은 권력 (시론, 우희종교수, 7.10) • PD수첩과 중앙일보 사진 연출 (옴부즈만, 김창룡, 7.11) • 권력의 승산없는 소송 (시론, 박경신교수, 7.28)
국민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이 앞선 PD수첩 광우병 방송 (6.26) • ‘PD수첩’ 수사가 중요한 이유 (6.28) • PD수첩, 버티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 (7.11) • PD수첩이 지금 할 일은 그게 아니다 (7.16) • 신뢰없는 PD수첩 국민에 사죄 마땅 (7.17) • 유행병 돼버린 검·경 소환불음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처리를 주목한다 (시사풍향계, 이창근교수, 7.13)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저널리즘의 무책임성 보여준 PD수첩 (5.21) • MBC 편파보도, 방종심의위가 가려야 (6.12) • PD수첩의 광우병 방송, 국민을 誤導했다 (6.18) • PD수첩, 의도 갖고 誤譯해 국민 우롱했다 (6.26) • 公權力을 ‘국민의 敵’만들려는 세력, 용납 안돼 (7.5) • MBC, 民營化 안 한다면 진실보다 할 건가 (7.9) • “PD수첩이 광우병 공포 조장했다” (7.17) • PD수첩 광풍에 진실이 매도당한 두 달 반 (7.18) • 국민 속여 놓고 신문 탓하는 ‘도덕 불감증’ MBC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촛불에 녹아내린 공권력 (광화문에서, 최영훈사회부장, 6.20) • 건국60년에 悲運의 나라만들기 (배인준칼럼, 논설주간, 7.1) • PD수첩이 사는 길 (광화문에서, 권순택논설위원, 7.7) • MBC, 佛방송 보고 공정성 배우라 (특파원칼럼, 7.24)
문화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광우병 PD수첩’ 제작의도 철저히 규명해야 (6.26) • MBC, 검찰 ‘PD수첩’ 수사에 진지하게 협조하라 (7.9) • MBC, 어설픈 변명 말고 자료제출명령 승복하라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PD수첩’과 방송의 책임 (포럼, 성동규교수, 7.2) • 진보 성향 성직자들의 ‘촛불일탈’ (포럼, 차기환변호사, 7.3)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완벽하진 않지만 왜곡없다’고?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 저널리즘 (씨줄날줄, 함혜리논설위원, 6.27) • 정부는 ‘법치주의’를 버리려는가 (열린세상, 하승수교수, 7.4)
세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왜곡 PD수첩 ‘정직한 목격자’ 맞나 (6.27) • PD수첩, ‘진실 해명’ 책무 있다 (7.10) • KBS/MBC,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치주의 회복하자 (강경근칼럼, 6.30)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PD수첩’, 온 나라에 불 지르고 시침 떼선 안돼 (5.21) • 번역자가 증언한 PD수첩의 의도적 ‘광우병’왜곡 (6.26) • ‘미국쇠고기=광우병’ 날조 TV 어찌해야하나 (6.27) • 반(反)정부 정치세력 거점된 국민의 방송 (6.28) • 쇠고기 告示해놓고 또 뒷집만 지고 있는 정부 (6.30) • 범죄집단 회의만도 못한 ‘PD수첩 대책회의’ (7.10) • 70일만에 다시한번 국민 농락한 PD수첩 (7.17) • PD수첩, 광우병 선동한 強度로 광우병 진실 보도하라 (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스티 미니츠’와 PD수첩(한삼희, 논설위원 6.27) • ‘번역 탓’ 하지마라 (시론, 이종인번역가, 7.2) • 광우병 소동 1년 후의 한국을 가다 (강천석칼럼,주필, 7.4) • ‘먹통’된 국가시스템 (동서남북, 박두식정치부장, 7.7) • ‘PD수첩’과 광우병... 그거짓의 몽타주 (시론, 윤석민교수, 7.7) •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기자수첩, 7.11) • 공은 MBC 로 넘어갔다 (시론, 윤석민교수, 7.18)

구분	사실	칼럼
중앙 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영방송이라면 사회적 책임도 져야 (5.21) • MBC는 PD수첩 징계하고 사과해야 (6.26) • MBC는 초법적 존재인가 (7.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인터뷰하고 30초만 골라서 방송 (취재일기, 6.20) • OIE, PD수첩과 다시는 인터뷰 않겠다는데,.. (취재일기, 7.14) • 기자와 PD의 공통점 (시시각각, 노재현, 7.18) • 페어니스 독트린 (분수대, 양성희문화스포츠부장, 7.19)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말 전도된 조중동의 ‘피디수첩’ 공격 (6.27) • 검찰, 정권의 ‘해결사’로 전락했다 (6.28) • 민주주의 위협하는 ‘국가폭력’ (7.1) • ‘방송장악 쿠데타’ 시작됐다 (7.18) • 최고기 국정조사인가, ‘PD수첩’조사인가 (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대포가 촛불을 이길수 없는 이유 (장정수칼럼, 6.30) • 납득하기 어려운 피디수첩 검찰수사 (시론, 황용석교수 7.8) • 기가막힌 나라 (한겨레프리즘, 7.9) • 피디수첩과 검찰의 행보 (김효순칼럼, 7.9) • 촛불집회와 음모론 (유레카, 김지석논설위원, 7.10) • ‘대의’만 남고 ‘민주’는 사라져 (홍세화칼럼, 7.14) • 5년은 너무 길다 (아침햇발, 7.15) • 법 해석의 정치적 커밍아웃 (야!한국사회, 7.17) • 세종로 1번지 검찰청 (아침햇발, 7.18)
한국 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이없는 PD수첩, 잘못 사과하라 (6.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들아, 잘 좀 하자 (임철순칼럼, 6.27)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법 (편집국에서, 이충재부국장, 7.1) • 결자해지 (김종광의 길 위의 이야기, 7.11)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검찰의 소위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서울남부지법의 ‘정정·반론 보도’ 판결을 즈음해서다. 이전시기까지 각 신문들은 자체 필진과 외부 필진을 동원해 PD수첩의 프로그램 왜곡 과장 문제에 대한 시각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나 7월말 이후에는 주로 ‘사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일부 신문을 제외한 대부분 신문들의 보도 내용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검찰과 법원이 PD수첩의 보도가 고의적인 왜곡이며,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하나는, 따라서, 중재위·방통심의위·검찰·법원이 PD수첩의 보도내용이 왜곡 과장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으므로 MBC는 더 이상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는 언론자유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MBC는 이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검찰이 요구하는 출두·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리며 눈치를 보지 말고 PD사건을 원칙대로 제 때 수사해야 하며, 더욱이, 이번 수사는 ‘언론의 취재원보호 원칙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사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가 있는 만큼 가해자인 MBC 관계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신문은 ‘의도가 없는 취재와 보도는

사실상 없다'면서 PD수첩측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 프로그램은 분명한 기획의도, 즉, '광우병의 위험을 환기시키고 정부의 졸속·굴욕 협상을 비판한다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검찰 수사는 그 자체가 표적·과잉 수사적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적다는 것이다. 한 신문은 검찰의 PD수첩 수사가 쇠고기 정국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다른 한 신문은 검찰이 청부수사에 정권의 대변인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심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개한 것부터가 선입견에 따른 판단이라는 법률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직접 증거나 당사자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제 스스로 만든 자료를 주요 증거인양 공개한 것도 낯 뜨겁고 이를 공개적으로 질의서 형태로 발표한 것도 정치적 압박으로 비쳐져 여러모로 법률가 집단인 검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여섯 번째 시점은 MBC가 시청자 사과 방송을 한 직후로서 이 사과방송은 모든 신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한 진영은 MBC의 사과방송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파상적인 공세를 견디지 못한 결과, 즉, 여론이 악화돼서가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한 것, 혹은, MBC가 정권과 타협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진영은 MBC가 석 달에 걸친 여론의 오도를 결국 시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사과방송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표 3> PD수첩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칼럼
(검찰 '중간수사발표'부터 - 10.3까지)

구분	사설	칼럼
경향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기 정국 본질 호도하는 'PD수첩' 수사 (7.30) • 'PD수첩'엔 시퍼런 칼날, 권력엔 무딘 칼날 (8.4) • MBC가 끝내 'PD수첩' 사과방송을 한 까닭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도 민망한 'PD수첩 수사' (기자메모, 7.31) • MBC 사장의 백기투항 (미디어세상, 최영목, 8.18) • MBC 사과방송을 보고 (시론, 우희중, 8.20) • '양치기 소년'과 언론 (삶터에서, 권호장교수, 9.22)
국민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국민을 더 모독하지 말라 (7.30) • PD수첩 더 우기면 국민 외면받을 것 (8.2) • MBC 왜곡보도 고질적 버릇인가 (8.4) • MBC, 진실로 사과했다고 볼 수 없다 (8.14)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국민 속인 PD수첩' 사죄하고 책임져야 (7.30) • KBS와 MBC의 '공영' 거부하고 '언론' 포기하기 (8.4) • MBC 공영성 회복 아직 멀었다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 '콩가루정권' (형설수설, 8.4)
문화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이 적시한 MBC '광우병 PD수첩'의 허구성 (7.30) • KBS와 MBC, 언제까지 법 앞에 방자할 것인가 (8.1) • 106일 여론오도를 결국 시인한 MBC (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C 'PD수첩'과 흑세무민 (포럼, 김우룡, 7.31)
서울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검찰 물음에 답할 차례다 (7.30) • PD수첩 토달지 말고 정정보도하라 (8.2) • 공영방송이길 거부하는 KBS와 MBC (8.4) • MBC '광우병 사과' 공영방송 전기되길 (8.14) 	
세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검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7.30) • PD수첩, 언제까지 법대 밑에 숨을 것인가 (8.2) • 공영방송 본분 상실한 KBS와 MBC (8.4) • 'PD수첩' 사과, MBC 거듭나는 계기 삼길 (8.14)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찰 "PD수첩 보도내용 대부분 왜곡됐다" (7.30) • PD수첩, 법원의 왜곡 정정보도 판결도 끌어올릴 것인가 (8.1) • 중재위·방통위·검찰·법원 결정 모조리 뭉개는 PD수첩의 중점(8.4) • MBC는 이제 광우병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 (8.14) • TV가 온 나라를 불사르는 일 다시 없으려면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치 보기는 검찰 중립 아니다 (대평로, 8.5)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의 왜곡보도가 언론자유 아니다 (7.30) • MBC의 보도윤리를 개탄한다 (8.4) • 형식적 사과방송으로는 설득력 없어 (8.14)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부수사에 정권 대변인 노릇까지 하는 검찰 (7.30) • 대책회의 "퍼디수첩 검찰수사 왜곡됐다" (7.31) • 권력 앞에 스스로 몸 낮춘 검찰 (8.4) • "이대로 가면 한국 언론자유 대참사" (8.7) • '타협' 한다고 이 정권이 방송장악 멈출까 (8.14)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D수첩 왜곡 사법적으로 가려내길 (7.30) • 법원도 PD수첩의 잘못 지적하는데 (8.1) 	

필자가 광우병과 관련한 한국 신문의 보도 양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한국 언론은 10여년 전부터 ‘광우병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과 ‘한국인들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한국의 신문들은 ‘광우병의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정부가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광우병 파동은 통상마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었다 (이승선, 2008b).²²⁾

<표 4> MBC ‘PD수첩’ 방송이전 주요 신문의 ‘광우병’ 관련 보도

(1996.1.1 - 2008.3.31)

신문	기 사
조선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우병 (이규태코너, 1996.3.23. 5면) • 뇌세포에 작은구멍 송송 (이종간 전염도 가능한 듯 / 광우병 공포 이유있다 / 왜? 뉴스속의 과학, 1997.1.29.28면) • ‘광우병’ 공포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2001.2.1. 41면) • 만물상 (광우병공포가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다,,,,,2001.1.29. 5면) • 광우병 (이규태코너, 2000.12.6.7면) • 광우병 제대로 알려야 (사설, 2001.2.8. 2면) • “우리는 광우병 걱정없다?” (사설, 2001.2.6. 2면) • 광우병과 말고기 (이규태코너, 2001.2.6. 7면) • 여론조사 (광우병, 2001.2.12. 7면 / ※응답자의 93%가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하고 있음) • 광우병과 알츠하이머 (시론, 2001.2.20. 6면 / 서유현, 서울의대교수·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 • 인간 광우병 (이규태코너, 2001.2.22. 7면) • 광우병 Q&A (유통중인 한우·수입쇠고기 모두 안전, 2001.2.21.29면) • 여론조사 (식품안전성, 2001.4.16.7면 / ※한국은 광우병 우려에 따른 육류소비의 감소도 미국에 비해 컸다.,,,) • 불황...광우병...유통업 ‘최악의 연말’ (2003.12.30.B1면 / 광우병 직격탄 맞은 할인점,...) • 광우병 파동 통상마찰 대상 아니다 (사설, 2003.12.30.A23면) • 뭘 믿고 고기 먹으라나 (기자수첩, 2003.12.29.A3면/ 99.99% 안전해도, 정부가 나머지 0.01%의 위험관리를,,,,) •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 (기자수첩, 2004.1.3.A3면) • “미국에 광우병 소 더 있을 것” (국제조사단 결론...美, 한국정부에 통보, 2004.2.13.A2면) • 美에 또 광우병? 발병 의심 소 11개월 만에 나타나 (2004.11.20.A15면) • [경제글쓰기] (광우병 파동 때 한우값은 왜 폭등할까 / 문제 / 학생 우수작/ 이렇게 써보면, 2005.9.30.B13면) • 100% 안전식품은 없다 (과학칼럼, 2005.12.17.A33면/ 결론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이 소비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 /분명한 것은 위험성이 0%일수는 없으나 0%에 가까울,,,,, 이중복 건대 수의학과 교수) • [도서]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 (2007.3.10. D2면, 콧 캐러리지움, 김상윤·안성수 옮김,,) • 美 쇠고기 안전 확신 책임은 미국의 몫 (사설, 2007.8.4.A27면) • [논술을 돕은 이 한편의 책] (과학기사 제대로 읽는 비결을 공개,,, 2007.6.7. E3면/ 광우병이 무엇인지는,,,,) • 美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 (‘병든 소 동영상 파문’ 냉동육 6만5000t, 2008.2.19, A2면)

22) 이 자료는 한국언론재단 KINDS 기사검색과 조선일보·중앙일보 홈페이지 기사검색을 통해 수집되었다. 이 외에도 광우병을 다룬 이들 신문의 관련 기사는 많으나 주요 기사만을 표에 정리했다.

신문	기 사
동아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도 광우병 파문 (유럽, 소 추출성분 함유제품, 1996.3.31. 9면) • 쇠고기 먹기가 겁난다 (사설, 1996.6.23.3면 /,,, 식품은 바로 생명이요 건강이다) • 광우병과 홍역, 느슨한 대책 (사설, 2001.1.29. 5면) • [아하! 질병이야기] ‘인간 광우병’ 에이즈보다 치명적 (2001.1.31.21면) • 광우병, 우린 괜찮나 (시론, 2001.2.2.7면, 김상윤 서울대의대교수) • 광우병 대책, “소가 웃을 일:…농림·보건 난맥상 (2001.2.6.4면) • 광우병 정말 안심해도 되나 (사설, 2001.2.6.5면) • 설부터 선언보다 대책을 (기자의 눈, 2001.2.8.7면) • 식약청 “유럽소 원료 약·화장품에 쓰지 말라” (2001.2.9.26면) • 광우병 안전지대 아니다 (사설, 2001.9.12.5면/,, 한국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해졌으므로 단 0.1%의 …) • 광우병 안걸리는 소와 LCD단지 (사설, 2003.12.12.2면) • 광우병 비상, 식탁안전 만전 기해야 (사설, 2003.12.26.2면/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뒤야 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위해(危害)를 없애는데 필요한 경제적 손실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 • 햄버거 패러독스 (횡설수설, 2003.12.26.6면/ 햄버거와 광우병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문명의 모진,,,) • 美광우병 비상 / 美, 도축 牛 0.07%만 안전검사 (2003.12.27.4면) • 에이즈…사스…광우병…“지구촌 21세기 疫病 무방비” (2003.12.30.12면) • ‘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사설, 2003.12.31./ ,, 우리에게 안전한 쇠고기를 골라 수입할 권리가 있다.,,) • ‘美쇠고기수입 재개’ 안되는 이유 (기자의 눈, 2004.1.1.6면/미국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정부가 거절했다고 한다.,) •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2007.3.23.24면/ 김용선교수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 美 사상최대 쇠고기 리콜... ‘병든 소 도축’ 2년간 유통 (2008.2.19.21면)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 광우병 소동- 감염 댄 발작증세 사흘만에 죽어 (1995.12.14.8면) • 광우병 파문 (분수대, 1996.3.31) • 병든 소, 죽은 소 왜 유해한가 (1996.6.22. 3면) • 광우병 걸린소 먹으면 인간도 비슷한 병 걸려 (1996.10.25. 9면) • 신종괴질 안전지대 아니다 (취재일기, 1997.8.18. 34면) • 영국 “수백만명 광우병 숨질수도” (2000.10.28.11면) • 쇠고기 안 먹어도 광우병 위험 (홍혜걸의 의학 프리즘, 2001.1.4. 49면) • 광우병 “한국도 안전지대 아니다” (2001.1.31.1면) • 광우병 전세계가 안전부절 (2001.1.31.3면) • 해명 급급한 ‘혹시나’ 광우병 (2001.2.1.7면) • 뒷북치는 광우병 대책 (사설, 2001.2.6) • 위험 심리학 (분수대, 2001.2.12.6면) • 유럽소 원료 화장품등 수입금지 (2001.2.15.25면) • “인간 광우병 목 아플 때 발병” (2001.3.19.10면) • 광우병 한국은 괜찮나 (취재일기, 2001.9.12) • 광우병에는 성역이 없다 (사설, 2001.9.12) • 부검을 활성화하자 (홍혜걸의 의학프리즘, 2001.11.19, 51면) • [케이블] 공포는 계속된다 (2003.2.3. S4면) • [케이블] 인간광우병의 공포 (2003.2.10, S4면)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美서 광우병 소 국내 시장 44% 차지...수급비상 (2003.12.25.1면) • 국내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사 안거쳤다 (2003.12.26.1면) • 유통 중인 쇠고기는 괜찮을까 광우병 국내대책 ‘소걸음’ (2003.12.26.3면) • 광우병 발견 워싱턴 쾰서 올해 1만8천여t 들여와 수입소 빼·내장 유통관리 허술 (2003.12.27.6면) • 광우병도 美 ‘힘의 논리’ 통할까 (2003.12.29.6면) • 소 등뼈·내장 美 식용금지 ‘못 걷는 소’ 유통도 막아 (2004.1.1.24면) • [Q채널] 광우병 인간에 전염되나 (2004.3.4.S4면) • “미국산 수입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77% (2006.11.3.33면) •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한단계 낮아져 ‘뼈 쇠고기’도 수입 못 막아 (2007.3.12.2면) • 미, 쇠고기 검역 제대로 하고 개방 요구해야 (2007.8.3.30면) • 미국 쇠고기 6만4000t 리콜 (2008.2.19.2면)

자료 : 이승선 (2008b: 109)

그리고 한국의 신문들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강조해 온 지난 10여 년은 한국에서 신문활용교육, 즉, NIE가 활성화된 시점이고, 더불어 초중등학교에서 논술과 토론교육이 강화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광우병 문제는 논술과 토론의 주제로 종종 다뤄졌고, 광우병관련 기사는 좋은 정보원이 되었을 것이다. 종이신문에 보도하고, 이 시기에 저변화된 인터넷을 통해 쉽게 기사검색이 가능해진 환경에서, 신문독자, 초중등학교 학생,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들은 ‘광우병’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쌓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NIE의 교육효과가 크다는 점, 서울에서 발행되는 큰 신문들의 광고효과와 신문의 정보 및 여론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국민이 갖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의 상당부분은 신문보도를 통해 획득되었을 것이라는 점 역시 부정하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4.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있어서 쟁점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여부를 다루는 것으로서 ‘PD수첩’ 보도가 ‘촛불집회’와 촛불집회 과정에서 진행된 특정 신문 광고불매 운동 등을 촉발한 요인이었는지를 규명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한 문제는 저널리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을 테고, 더불어, 특정 단체가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그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심층 논의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협상팀이 PD수첩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라 비롯된 것으로 해당 보도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건의 개요와 신문의 논조 분석, 관계자들이 제공한 자료 분석의 내용을 종합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수사의 쟁점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명예훼손 사건, 특히 정부정책·정책관료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바람직한가? 둘째,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가? 셋째,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은 부정될 것인가? 검찰의 ‘중간수사’를 비롯한 기존의 자료에 의하면 PD수첩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을 왜곡·과장·허위 보도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은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내용을 왜곡·과장·허위 보도하였으므로 공익성이 부정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인가? 넷째, 이 사건 보도에서 ‘무엇’을 핵심 ‘사실’로 규정할 것인가? 사실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로 구성되는 바 판례에 의하면 다소간의 거친 표현이나 지엽적인 오류는 진실한 사실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중재위·방통심의위의 결정과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청구사건 등은 ‘주저앉은 소’와 ‘아레사 빈슨사인’, ‘MM형 유전자’ 보도를 허위의 사실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처벌을 검토하는 형사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에서 제재·구제하려는 법익의 절차·내용과 같거나 혹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명예훼손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특히, 사적인 사안이나 사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과 달리 공적존재,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명예훼손 책임 면책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헌재결정의 취지, 공적존재·공적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등에서 언론의 면책을 확대해 온 대법원의 판례 경향은 이 사건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가? 여섯째, 검찰의 출두 명령 및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

1)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형사처벌

○ 농식품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에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 지난 6월 20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3개월 보름이 지났다. 검찰은 방송원본 테이프 제출을 요구하고 3차례에 걸쳐 제작진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으나 제작진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변경해 제작진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개자료제출요구’ 기자회견으로 대체하였고 방송사는 사흘 후 검찰청에서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중재위·방통심의위·법원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결정·판결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중립을 운운하거나 눈치를 보지 말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형사처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더욱이 PD 수첩의 내용이 악의적인 왜곡·과장·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이와 같은 악의적 왜곡보도는 언론자유의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응분의 형사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최근의 국제적 흐름은 명예훼손법을 완화해 언론자유를 더 보호하는 것이고 최근 20여년간 각국의 법원과 국제법원은 언론자유를 침해해 온 명예훼손법을 개혁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 놓았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명예훼손법이 권력의 정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깊은 우려의 결과이다 (손태규, 2005). 설리번 사건 때 ‘현실적 악의’ 개념을 적용해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을 헌법적 수준에서 판가름 해 온 미국에서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는 명예훼손의 내용, 허위, 현실적 악의 등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는데, 다시말해, 공직자 원고는 어떤 정치적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강력하고 적대적인 헌법적 정밀 조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 1986: 724; 손태규, 2005: 203-204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공직자 또는 정치인들의 언론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바 (박선영, 2002),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인에 관한 공적인 문제제기가 공적인 공간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법정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밀려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문재완, 2008: 91). 공직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에 정치적 의도가 보이며 소송이 비판 언론을 견제하는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현실적 악의 원칙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개진돼 왔다.

○ 신평에 의하면 미국의 헌법적 명예훼손법 이론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리는 외에 형사적인 징벌을 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신평은 미국의 연방차원에서 명예훼손처벌 형사규정은 없어진 점, 그리고 일부 주법에서 아직 잔존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형법상 명예훼손에 관한 제반 규정은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의한 제재수단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되고, 따라서 명예침해가 발생할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위험성만으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

이 타당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규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신평, 2004: 311-317). 김재협은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적 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어 형벌로 제재하는 나라는 이제 후진국에 속한다’면서 언론에 의한 사실보도 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언론으로 발표된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관하여는 통상 다툼이 있으면 그 입증 또한 어려운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김재협, 2002: 94-95).

○ 헌법재판소는 1999년 6월 97헌마265결정을 통해, 명예훼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형사제재를 경계하였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며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러나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³⁾

○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인 요청을 고려하여 첫째,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

23)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결정

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92도3160; 1994. 8. 26. 94도237). 셋째,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다.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²⁴⁾ 그리고 ‘공적인물이론’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현재의 이 결정취지는 2002년 1월 22일 대법원 200다37524,37531판결 이후 공적인물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²⁵⁾

2)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 사실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가?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죄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307조 및 309조상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고소든, 수사의뢰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절차상 가능할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농식품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에서 정운천 전 농식품부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보가 검찰에 출석, PD수첩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난다.²⁶⁾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질식하고, 언론의 위축이나 질식은 바로 다수결 원리의 형해화로 이어져 민주주의 또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만

24)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25)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2002.12.24.선고 2000다14613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2003.7.8.선고 2002다64384판결; 2003.7.22.선고 62494판결; 2003.9.2.선고 2002다63558판결; 2006.3.23.선고 2003다52142판결; 2007.9.6.선고 2007다2268판결

26) <동아일보>, 2008.7.30.1면.

든다”는 현재 97헌마265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보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그 피해자를 명시하고 위법성 구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보도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가를 엄정히 함으로써, 이후의 검토절차, 과연 PD수첩 보도가 그 ‘누구’를 특정했는지, 특정한 그 누구와 관련된 보도가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진실의 상당성조차 없는 ‘허위’의 것인지, 혹은,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공공성이 부정돼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정운천 전 장관과 민차관보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논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임한 집단구성원으로서 ‘협상팀’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인지, 혹은, ‘농식품부소속 공무원’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인지에 대한, 즉,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고의적인 왜곡보도’와 방송보도의 공익성

○ 앞서 사건 개요에서 살핀바와 같이 방통심의위 결정과 검찰 발표자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PD수첩 보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자막처리하고 왜곡·과장’하였다. 즉 PD수첩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을 왜곡 과장 허위 보도하였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은 서로 상쇄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를 다룬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은 부정될 것인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고의적으로 내용을 왜곡·과장·허위 보도하였으므로 공익성이 부정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인가?

○ 비방의 목적이란 상대방의 인격적 평가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악의적인 목적을 말하지만 주관적인 의도여서 증거에 의해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공표행위를 둘러싼 시간적·공간적·인적 및 사회적 상황 등 간접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김재협, 2002: 104). 이론과 달리 실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의 행동목적은 복잡다기하여 명예

훼손의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내면적, 심정적 요소를 국외자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성수, 1997: 345). 명예훼손의 요건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형법 제309조)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과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뤄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다 (박선영, 2002).²⁷⁾²⁸⁾ 인간의 행위, 동기는 복잡하므로 다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사익을 위한 것이 숨어 있다 하여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 통설인 것이다 (한위수, 1993: 422).

○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죄 심판에 있어서 보도내용의 공공성은 비방의 목적과 상관관계에 있다.²⁹⁾ 즉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면 공공성은 희박해지고 대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때 비방의 목적은 최소화되거나 부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27) 대법원 2000.2.25. 선고 98도2188판결; 2001.10.30. 선고 2001도1803판결

28) 대법원 2001.9.14. 선고 2001도2372판결; 2002.6.28. 선고 2000도3045판결; 2002.8.23. 선고 2000도329판결

29) 더불어 보도내용의 공공성은 진실성 판단에 있어서도 불가분의 성질을 띠고 있다. 즉, 우리 형법 제310조가 사실의 진실성과 목적의 공익성을 위법성조각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두 요건 중의 하나에 대한 착오는 다른 하나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될 수 없다. 우리 형법 제310조에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의 문제는 목적의 공익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어야 하고 형법 제310조에 있어서 공익성 요건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논하는 것은 형법 제310조의 착오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없다 (김종구, 1999: 247).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⁰⁾ 반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³¹⁾ 또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³²⁾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³³⁾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판단하였다.³⁴⁾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최근 대법원 판례는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협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승선, 2003: 181-183).³⁵⁾

30) 대법원 1960.10.26.선고 4293형상823판결; 1984.9.11.선고 84도1547판결;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31) 대법원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32)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5.11.10.선고 94도1942판결; 1996.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33) 대법원 1997.4.11.선고 97도88판결; 1998.10.9.선고 97도158판결

34)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5.11.10.선고 94도1942판결; 1996.4.12.선고 94도3309판결; 1996.10.11.선고 95다36329판결; 1996.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8.7.14.선고 96다17257판결; 2000.5.12.선고 99도5734판결; 2001.6.12.선고 2001도1012판결; 2002.9.24.선고 2002도3570판결

35)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 최근 대법원 판결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³⁶⁾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³⁷⁾

○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적인 언론보도의 형사제재를 검토할 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라는 요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알권리의 배려라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알권리)에는 공공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이로 인하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은 쉽게 수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예훼손적 표현에서의 “비방할 목적”(형법 제309조)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고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써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 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면 시간과 싸우는 언론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³⁸⁾

36) 대법원 2005.4.29.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1998.10.9.선고 97도158 판결; 2003.12.26.선고 2003도 6036

37) 대법원 2006.8.25.선고 2006도648판결; 2006.3.23.선고 2003다52142 판결

38) 헌법재판소 1999.6.24.선고 97헌마265결정

4) 사실, 진실한 사실, 허위의 사실과 진실 오신의 상당성

○ 이 사건 보도에서 ‘무엇’을 핵심 ‘사실’로 규정할 것인가? 사실은 ‘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로 구성되는 바 관례에 의하면 다소간의 거친 표현이나 지엽적인 오류는 진실한 사실의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중재위·방통심의위의 결정과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청구사건 등은 ‘주저앉은 소’와 ‘아레사 빈슨사인’, ‘MM형 유전자’ 보도를 허위의 사실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처벌을 검토하는 형사사건으로서 다른 기관에서 제재·구제하려는 법익의 절차·내용과 같거나 혹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중재위·방통심의위·법원에서 허위사실로 규정한 것들에 대해, PD수첩측은 허위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둘러싼 협상의 부실을 지적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사실을, 따라서, 빈슨의 사인이나 MM형 유전자, 주저앉은 소에 두어서는 안되며, 기획의도와 관련된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번역의 오역 혹은 의도적 왜곡 과장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앞서 제기한, 이 사건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의 명예 훼손과 관련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과 밀접하다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97헌마 265결정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형사벌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행위를 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적 인물의 공적인 활동과 관련된 신문보도에 비추어 생각컨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알권리)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의 게재(掲載)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되고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誤謬)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⁹⁾

○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해 왔다.⁴⁰⁾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우리 대법원 판례도,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細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본다.⁴¹⁾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인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⁴²⁾ 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⁴³⁾ 그리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⁴⁴⁾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공적인 존재에 대한 의

39) 헌법재판소 1999.6.24. 선고 97헌마265결정

40) 대법원 1996.8.23. 선고 94도3191판결

41) 대법원 1998.10.9. 선고 97도158판결, 2000.2.25. 선고 98도2188판결, 2001.10.9. 선고 2001도3594판결,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2002.9.24. 선고 2002도3570판결. 이 점은 이번 사건 판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임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3570판결 등 참조)”.

42)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43) 대법원 1988.10.11. 선고 95다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1996.10.11. 선고 95다36329판결, 1998.7.14. 선고 96다17257판결

44)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24624판결, 2001.1.19. 선고 2000다10208판결

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실시하고 있다 (이승선, 2003).⁴⁵⁾

○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인의 사적사안과 구별해 명예훼손 책임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는 2002년 이후 대법원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 수용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공적인물이나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면책의 범리는 기존의 ‘상당성이론’을 넘어 ‘현저하게 악의적인 공격의 법리’로까지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은 진실하고 공공성이 있는 언론보도의 경우 면책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1988년 10월에 선고한 85다카29판결에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로 진실성·공공성 외에 ‘상당성’을 새로이 제시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후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은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왔다 (문재완, 2008: 88-89). 그리고 헌재가 1999년 ‘공적인물이론’을 제시한 후 대법원은 현재의 공인이론을 수용한 듯 판결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서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취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문재완, 2004; 2008). 즉 현재는 공적인물과 사안, 사적인물과 사안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인물의 공적활동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실시하였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실시하고 이에 덧붙여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관한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야만 위법성을 인정한다 (김동하, 2007: 15). 2002년 이후 대법원은 명예보호와 언론출판 자유의 한계 설정은 표현된 내용이 사적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당해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45)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2.12.24. 선고 2000다14613판결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일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⁴⁶⁾ 또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판시했다.⁴⁷⁾ 나아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 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⁴⁸⁾ 그리고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⁴⁹⁾ 2006년 법원의 명예훼손 판결 동향에 따르면 법원은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⁵⁰⁾ 동아일보사의 1인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보도의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잘못이 없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⁵¹⁾ 또 법원은 “다소 감정적이고 거칠거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자제해야 마땅하나 공

46)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판결 (일명 민노총 사건)

47)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14613판결 (일명 KBS 프로듀서 사건)

48) 대법원 2003.7.8. 선고 2002다64384판결 (일명 전북도지사 사건);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판결 (일명 대전법조비리보도 사건)

49)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2494판결 (일명 정치보복기소주장 사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선거법위반 사건 등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판시했다.

50) 서울중앙지법 2006.1.18. 선고 2004가단256802판결. 이 사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김모씨가 박근혜 한나라당대표, 조선일보사,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원고패소했다.

적인 관심사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의한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므로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이것이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한 쉽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⁵²⁾ 또 법원은 공직자의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취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보도내용은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승선, 2008a).⁵³⁾

○ 최근 대법원 판결 역시 진실한 사실과 허위의 사실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2월 선고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51) 서울고법 2005.11.29.선고 2004나85035판결

52) 광주고등법원 2006.11.17.선고 2006나298판결. 주식회사 0000가 제주일보사와 소속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07.2.22.선고 2006다87217판결

53) 서울남부지법 2006.5.11.선고 2005가합8324판결. 서울고법은 서울특별시와 시장의 비서관 김모씨가 문화방송 소속 보도본부장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1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직자의 청탁 또는 뇌물수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으로 방송보도 문구들의 객관적 내용은 검찰 수사 및 그 결과 내용과 같고, 피고들이 증거관계가 표시된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보도한 이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와 같이 판시하였다.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⁵⁴⁾ 또,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⁵⁵⁾

5) 공적인물의 명예훼손

○ 공적인물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사적인물과 구별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 및 대법원 관련 판례들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공직자와 공적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면책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을 경우에도 진실오신의 상당성이론, 입증부담의 완화법리, 그리고 최근의 ‘현저히 악의적인 공격이 아닌한 법리’에 의해 그 범위가 확장돼 왔다.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서 이 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보도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처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차관보는 주요 공직자로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등이 실시한 소위 ‘공적인물’ 혹은 ‘공직자’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처

54)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6도2074 판결

55) 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벌을 희망하는, 혹은, 처벌을 반대하지 않는 이 사건의 명예훼손죄 책임의 면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이다.

6) 출두와 자료제출의 문제

○ 검찰은 제작진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하고, 원방송테이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고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 역시 제출하는 것이 엄정한 법 집행 절차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상당수 언론들은 제작진이 법적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되고 검찰 역시 제작진을 ‘직접’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D수첩측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의하면 “제작진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 ‘내사’는 아예 없는 말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내사와 관련된 ‘사복경찰관 직무규칙’상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치 않은 내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⁵⁶⁾ 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취재자료에 입각한 편성은 언론사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행위로서, 인터뷰를 포함한 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가 취재원과 맺은 보호약속을 깨뜨리는 것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또, 명예훼손죄를 논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방송된 내용’만으로 그것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도 있어선 안 되는 일이기에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⁵⁷⁾

56) ‘사복 경찰관 직무규칙’ 제20조 내사 관련 조문에 따르면 “범죄에 관한 신문 보도나 기타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해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할 때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해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6>, 검색일 2008.10.4)

57)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836100363100000&pagesize=1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 PD수첩측은 7월 15일 방송을 통해 검찰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은 7/2일 PD수첩 팀에 촬영원본 제출을 요구해왔다. PD수첩 4.29일자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검찰이 요구한 것은 아레사 빈슨(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돼 미국질병통제센터가 부검을 실시했던 미국인 여성)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던 동영상 전 부 등 모두 10건. PD수첩이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뭘 취재했고 어떻게 편집했는지 검찰 스스로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 목적이라면 ‘누구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함에도 검찰의 자료 요청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정

【 참고문헌 】

- 김동하 (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제27권 제3호, 5-38.
- 김재협 (2002).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김재협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출판, 93-121.
- 김종구 (1999). 형법 제310조와 착오, <연세법학연구>, 제6집 제1권, 245-262.
- 문재완 (2004).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언론중재>, 제24권 제1호, 4-20.
- 문재완 (2008). <언론법>, 늘봄.
- 박선영 (2002). 한국언론의 특성과 최근의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 분석. 한국언론법학회 제1회 학술심포지엄 <한국언론의 현황과 공인의 명예훼손>, 29-55.
- 손태규 (2005). ‘현실적 악의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한국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1호, 192-220.
- 신 평 (2004).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 이승선 (2003).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한국방송학보>, 제17-3호, 161-196.
- 이승선 (2008a).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대응,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법제적 시각. 한국언론학회 <진단과 대안 10 :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토론회> 자료집, 1-15.
- 이승선 (2008b). PD수첩 파문관련 신문보도 분석. 한국언론재단, <신문과 방송>, 통권 452호, 106-111.
- 표성수 (1997).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 한위수 (1993).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24집, 393-465.
- 한위수 (2004).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제24권 제1호, 22-39.

부정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본자료를 내놓으라는 검찰의 요구는 법 논리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취재 과정과 내용을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편, 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있어선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원한다면 PD수첩의 원본을 볼 수 있다면 앞으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PD수첩의 취재에 응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PD수첩이 뭐가 쟁기는 것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닌가’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은근히 부추기는 언론이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그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 춘 식 박사

(경민대 교수(강의전담), 서울대 객원교수,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 前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언론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 춘 식 박사 (경민대 교수(강의전담), 서울대 객원교수,
뉴라이트방송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 前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

오늘 이 자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PD수첩이 검찰에 고발된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하자는 자리다. 이러한 제안을 받고 느낀 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회의였다.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나의 인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MBC PD수첩으로 인하여 촛불집회가 60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동안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이 있다고 하면, 촛불집회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인권이 있다. 길이 막혀 장사를 못한 사람들과 불법적인 거리 행진으로 인하여 교통이 차단되고 이로 인하여 인권의 침해를 받은 많은 선량한 시민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믿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것이다.

광우병 관련 방송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의 권리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윤리를 지키지 않은 언론인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하겠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북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수백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인권이나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주에 자살한 인기 탤런트 최진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악플에 시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MBC PD수첩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과거에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겠지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인권문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 MBC PD수첩은 진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실처럼 보도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오보이고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PD수첩을 방송의 장르별로는 다큐멘터리라고 하지만, 광우병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은 그 당시에 민감한 사회적 이슈이었기 때문에 보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설사 보도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확실히 규명한 다음에 방송했어야 하지만, MBC는 이러한 점을 소홀히 하였다. 소홀히 하였다고보다는, 즉 과실이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고의성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보자.

첫째, 주저앉는 소(downer)라고 해서 모두 광우병이 걸린 것이 아니며, 주저앉는 소 중에서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저앉은 소의 확률도 모르는데 마치 주저앉는 소는 모두 광우병이 걸린 것처럼 보도하였다. 아마도 광우병에 걸린 소가 주저앉을 확률은 5/6 정도라고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확률은 아주 낮을 것이다. 다른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는 3마리이고,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소 중에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⁵⁸⁾

둘째, 인간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마치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하였다. 내 기억이 맞다면 가정문으로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마치 실제인 것처럼 번

58) 권순택, “[광화문에서/권순택] PD수첩이 사는 길,” 동아일보, 2008. 7. 6. 편집

역하여 보도하였다. 이렇게 하면 다수의 시청자는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셋째, TV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MBC PD수첩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방송하였다. 사과방송 또는 해명방송이라는 명분하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시청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방송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넷째,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음이 이미 보도된바 있다. 번역을 담당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사실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오보와 관련된 해외사례 ~ 진실만을 보도해야

MBC PD수첩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오보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CBS의 60 Minutes Wednesday(60분)가 있다. 2004년 9월이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다. 이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던 CBS는 사실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정확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군 복무 시절에 문제가 있었다는 몇 장의 메모를 토대로 방송하였다. 결국 CBS 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외부인사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어서 수석부사장을 포함한 제작진을 해고하고, 당시 CBS의 대표적인 앵커였던 Dan Rather는 이듬해인 2005년 봄에 CBS를 떠나게 된다.

당시 CBS의 사장이었던 Andrew Heyward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Based on what we now know, CBS News cannot prove that the documents are authentic, which is the only acceptable journalistic standard to justify using them in the report. We should not have used them. That was a mistake, which we deeply regret.”

당시 CBS 사장은 저널리즘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도 또는 리포트를 할 때는 관련된 증거가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었다. 진실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방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긴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잘못을 한 것이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이다. 즉, 미국 기준으로는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당시 앵커였던 Dan Rather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If I knew them what I know now - I would not have gone ahead with the story as it was aired, and I certainly would not have used the documents in question.”

방송한 이후에 증거로 제시한 여러 장의 메모의 진실성을 규명하지 못한 것을 안 이후에 한 이야기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혹이 있는 문서를 근거로 하여서는 안 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저널리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이는 그 이후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9월 8일 방송의 토대가 된 메모의 위조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원본은 이미 소각되었고, 몇 차례 복사된 후에 팩스로 보내진 문제 사본을 가지고 원래 메모가 진실인지 아닌지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명확히 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CBS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추구를 하였고 60 Minutes Wednesday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다. 당시 CBS에서 보도된 이후에 문제를 제기한 파워라인은 블로거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진실을 속이는 것의 끝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었다. 타임지는 파워라인을 ‘올해의 블로거’로 선정하였다. 파워라인이 제기한 문제점은 간단하다. 날짜를 표시할 때 th를 쓰는데 이것이 윗첨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당시의 타자기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었다는 점이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PC의 Word Processor를 썼다는 것이다. 분명한 위조다. 당시 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Killian 증명은 이미 사망한 이후이다. 이 케이스는 아주 유명한 것으로 Killian documents controversy라고 부르며 Memogate 또는

Rathergate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유명한 사건이 CNN의 뉴스 본부장인 Eason Jordan이 2005년 1월말에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들이 저널리스트들을 조준 사격했으며, 이로 인해 12명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당시 블로거로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무명의 로니 아보비츠에 의해 알려지면서 결국 옷을 벗게 된다.¹⁾ 이를 보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발언도 저널리즘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오보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폐지된 사건이 있다. 아사히TV의 ‘뉴스 스테이션’에서 1999년 2월 1일에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에서 재배된 시금치 등 채소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했지만, 추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결국 아사히TV는 사과방송을 하게 되고, 우정성은 아사히TV에 대해 “부정확한 표현은 유감”이라고 하며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다. 소송결과 2003년 10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시청자가 방송 전체에서 받게 되는 인상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방송 내용이 진실이었다고 증명되지 않는다”고 1, 2심 판결을 뒤엎고 피해 농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사히TV는 2004년 3월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피해 농가에는 1000만엔의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 물론, 아사히TV는 “(보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도코로자와산 채소의 안정성에 의심을 사게 만들어 농가에 심대한 폐를 끼쳤다”고 사과방송을 하였다.²⁾

당시 일본의 판례에서는 방송 보도 내용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을 방송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준 것이다.

이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CBS와 CNN 사례에서 보듯이 방송내용의 진실성이나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것이 저널리즘의 최소한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1) 김익현, “CNN 뉴스 본부장 퇴진시킨 블로거의 힘,” 아이뉴스24, 2005. 2. 15.

2) 김동호, “잘못된 보도 뎀 조사→사과→책임…그들은 달랐다,” 중앙일보, 2008. 7. 19.

▣ 광우병 관련 MBC PD수첩의 문제점

이러한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첫째,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방송하였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방송을 강행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둘째, MBC PD수첩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번역한 사람의 진실고백만이 아니라,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보도의 대상이 되었던 여인도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사용하여 질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것이다. 즉,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방송이 된 이후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진 후에도 MBC는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후속방송의 내용도 그러하고, 오늘 논의가 되는 형사고발과 관련된 사항도 그렇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가 문제냐고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광우병과 관련된 MBC PD수첩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이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어긴 것으로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형사고발이 되었건 손해배상 청구이건 모두 MBC와 제작진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방송사도 잘못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형사고발되었다고 해서 방송의 독립성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만일 이러한 (사실로 확인된 것에 근거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구나 쉽게 남의 인권을 방송을 통해 침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7조 제1항)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형법 제307조 제2항)를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우병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 케이스는 공연한 사실(진실 또는 진실에 상당하는 사실)이 아니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다룬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제문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도 몇 가지 측면에서 허위의 사실을 방송한 것을 인정하였다.³⁾

첫째, 주저앉는 소가 대부분 광우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 1997년 이후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없다. (정정보도 명령)

둘째,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니다. (이미 정정보도)

셋째, 국제 수역사무국이 정한 분류기준에 의하면 월령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에도 편도와 회장원외부 등 2가지만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보도하라. (명확한 근거 미제시에 대한 반론보도 명령)

넷째,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를 지녔다고 해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정정보도 명령)

이 중에서 셋째는 진실성 위반이 경미하다고 하여도, 주저앉는 소가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방송한 점과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한 점이나, MM형 유전자의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항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문 번역자인 정지민씨가 밝힌 바와 보면 방송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는 CNN 오보 케이스에서 보듯이 사전에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정도⁴⁾가 아니라, 진실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

3) 서울남부지법 2008.7.31.선고 2008가합10694판결.

4) CBS는 방송 이전에 전달된 메모에 대한 자체검증을 하였다. 자체검증 과정에서 전달된 메모에서 사용한 낱자를 기술한 워침자 형태의 'th'가 문서 제작 당시에는 쓰이지 않던 타자기의 활자 형태임을 문서 위조전문가들이 언급하면서, 문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간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렇지만 CBS는 이를 묵살하고 방송하였다.

송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해 보면 PD수첩 케이스는 발제자의 견해처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307조 제2항에 의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반복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에서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PD수첩의 경우는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이 PD수첩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PD수첩 건에 대하여 공익성을 주장하려면 방송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어야 한다. 설사 일부 사실관계에서 진실한 것으로 믿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PD수첩 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공익성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다룬 것이라는 것은 1심판결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맺음말

MBC PD수첩에 대하여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제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못하고 싶다. 과연 어떤 인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PD수첩에서 오보를 함으로써 발생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누가 이를 부담할 것인지 알았다면, 아마도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본다. MBC는 당당히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MBC가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형법의 명예훼손죄 관련 조항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장 호 순 교수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언론보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장 호 순 교수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개인도 아니고 더욱이 평범한 집단도 아닌 공영방송사가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제소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보이고, 현실적으로도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중 하나인 문화방송도 인권침해를 호소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위원회마저도 정권교체 후 발생하고 있는 “언론주도권” 쟁탈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필자는 아직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문화방송의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수사가 매우 심각한 반인권적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검찰수사의 궁극적 피해자가 문화방송이 아니라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에서 문화방송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일반 언론사 혹은 작은 언론사가 궁극적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 땅에서 발생한 언론과 권력 간의 갈등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는 적당한 선에서 호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나 검찰의

입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영방송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와 같은 업포로 “분위기”를 잡은 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대국민 홍보나 언론관계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언론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언론을 적당히 길들일 수 있는 것이다. 건국 60년동안 이승만 정권이후 노무현 정권까지 역대 정권이 늘 사용해온 방법이다.

문화방송도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 보도내용의 진위나 정당성을 따지기 보다는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그릇된 보도내용보다는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럴 가능성은 내가 산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낮지만, 만에 하나 피디수첩 피디나 문화방송 사장이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바로 다음 국경일에 대통령 사면대상자 명단에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는 관계없는 다른 작은 언론사들이 피해를 본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언론에 대한 검찰권 남용의 선례가 생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이다. 외국처럼 중범죄에 대한 기소를 배심원에게 맡기는 대배심(Grand Jury)제도도 없고, 국가연방검찰과 지방정부검찰간의 구분도 없는 일사분란한 체제이다. 일부국가에서는 검찰기소권의 남용을 막기위해 지방검사를 선거로 뽑고 있다. 국민적 견제장치가 없는 대한민국 검찰은 그래서 한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국민의 질시를 받아왔다. 독재권력 하에서 검찰은 집권자들의 권력 방어무기이자 정치적 도전세력의 공격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주화되긴 했지만 검찰권력의 민주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국민들에게는 법원의 “유죄판결”보다는 검찰의 “수사” 혹은 “구속수사”가 해당 범죄의 유무죄 여부를 판정하는 잣대이다. 검찰은 범죄 증거 확보와 피의자의 인신구속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비해 막강한 우위적 위치를 점한다. 더욱이 그 비용을 모두 세

금으로 충당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 수사를 위해 5명의 검사를 동원했다고 한다. 문화방송은 자문변호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변호사 1명의 비용을 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작은 언론사는 사실상 업무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전력해야한다. 검찰 수사만으로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민주화가 정착되어, 검찰이 설사 권력의 통제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엄정하게 언론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라도 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다수의 의견이나 방향에 도전하는 소수의 세력에 대한 견제나 탄압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표현과 언론보도에 대한 국가권력의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최소화한다. 민주화이전의 사회에서 권력자나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은 그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감추고 포장하여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자연히 명예훼손죄는 정치적 반대자의 탄압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에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사실상 위헌판결했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매우 어렵게 했다. 명예훼손을 구실로 공권력이 동원되어 개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해온 오랜 역사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표현이나 언론보도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언론보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기 마련이다. 권력을 감시비판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고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오류는 뗄 수 없는 일부이다. 언론은 발생한 사실을 완벽하게 재생해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내용은 삭제하거나 축소해야한다. 또는 전달과정에서 기자의 인지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빠트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정확한 언론보도”라는 말

은 “차가운 태양”처럼 성립될 수 없는 언어조합이다.

언론보도가 정확한 사실이 아니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어 처벌할 수 있다면, 모든 언론보도가 그러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 가능성을 무릎쓰고 나서서 권력을 비판하고 부조리를 고발할 사람들은 극히 적어질 것이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사회적 경쟁력은 퇴보될 것이 자명하다.

부정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민주사회의 대응방법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처벌이 아니라, 반론이나 정정기회를 주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토록 하는 것이다. 부정확한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사람은 언론중재제도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공인이나 공직자는 반론권요청이나 기자회견등을 통해 자신들에 대해 잘못된 보도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인과 공직자에게 민사상의 명예훼손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여지를 매우 좁게 만들었다. 명백하게 오류인줄 알면서도 고의로 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화방송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수사를 보면 일종의 부조리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일단 연극무대도 주인공도 모두 어색하다. 문화방송이 선택한 인권위도 어색한 무대설정이고, 주인공 격인 명예훼손 피해자도 보이지 않는다.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공직자인 한국측 협상대표와 당시 장관은 무수하게 언론에 등장해 수입협상의 정당성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지만, 자신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호소하는 것을 필자는 본 적이 없다.

엑스트라들도 웃긴다. 소위 보수언론사들 중 일부는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소위 보수 언론들은 더욱이 피디수첩의 보도가 촛불시위를 촉발했다며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보수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견제”라는 명제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에서 보수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금과옥조인 “국가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경제”도, 원래는 경

제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의 핵심가치인 개인의 자유 보호와 국가권력 견제를 뒤집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라고 행세하는 대한민국은 명품가방이나 구두 뿐만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에서도 “짜퉁”의 천국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국민적 반대여론과 시위는 한 방송사의 어설픈 심야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적극 보호하려는 의지를 정부와 위정자로부터 발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현 정부가 택한 것은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마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연출하는 부조리극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궁금할 뿐이다.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안 미 영 변호사
(시변 추천)

언론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안 미 영 변호사 (시변 추천)

방송은 신문과 달리 주파수의 제한을 받고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기때문에 공익성이나 공정성추구라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를 달성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방송법 제 5조에서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 6조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에는 비방과 개인적 모욕을 포함하는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외설과 같은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의 위배와 함께, 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질서파괴의 선동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언론이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로서 기본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동이란 문서, 도화, 언동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실행의 결의를 하거나 결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선동된 행위가 실행되는가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 및 국민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민영화 저지라는 이기적 목적 하에 왜곡, 허위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하였다면,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방송사업자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방송은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의 방송내용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방송하고 동물학대 고발용으로 제작된 동영상 속의 췌소를 광우병 소로 각인되도록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등 허위보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PD수첩의 방송으로 인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카페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것은 청산가리를 먹는 것과 같다”는 식의 소위 광우병괴담이 떠돌게 되었고, 위 방송을 시청한 상당수 국민들은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는 경우 이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라면스프나, 화장품, 의약품 등을 통하여 결국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상당수 어린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PD수첩의 방송내용은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고, 언론이 자유를 빙자하여 사회혼란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후 정국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서울 도심에 온통 마비시켜온 촛불시위의 진원지이자 기폭제역할을 하였습니다.

광우병과 관련된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수사의 핵심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왜곡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PD수첩'의 각종 인터뷰와 미국 언론의 보도, 전문가의 연구 자료 등을 활용하면서 무려 23개 항목에서 과장·왜곡 보도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례도 명예훼손사건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은 서로 상쇄관계에 있고, 특정

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내용을 왜곡,과장, 허위보도를 하였다면 공익성은 부정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PD수첩’측은 이번 수사에 대해 번역상 오류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과장이 어떻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검찰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와 취재원 보호 원칙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방종의 자유나 날조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으며,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언론의 자유는 자칫 폭력으로 변하기 쉽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PD수첩의 방송내용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허위 구성함으로써 객관적인 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할 방송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측은 스스로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고, 또 당당하게 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 ‘공영방송’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하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과장한 점 등 ‘미국소-광우병-죽음’이라는 등식을 확산시킨 ‘PD수첩’은 국민에게 심리적 공황을 야기시켰으며 사회 혼란, 국력 낭비, 국론 분열을 가져왔으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흑세무민’의 진원지로 작용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 요청을 묵살하고 있는 MBC측의 태도는 스스로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법과 질서의 상징인 검찰의 잇따른 출석요구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사회정의를 내세울 수 있으며, 공정방송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 및 국민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사가 허위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하였다면 공익성과 공정성 추구를 하여야 할 방송사업자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의 고발에 의하여 시작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

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진실을 깨끗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왜곡 의혹이 불거지고, 취재 자료 공개 요구가 커지자 취재원보호를 내세우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탄압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아니 왜곡 의혹을 받는다면 먼저 밝히는 것이 참된 언론이며, 스스로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국민 앞에 모든 자료들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응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의 적정성**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금 태 섭 변호사
(민변 추천)

언론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의 적정성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금 태 섭 변호사 (민변 추천)

1. 들어가는 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완전한 과학적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를 심층 보도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경고한 PD수첩의 내용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한 채 단기간 내에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둘러싸고 민사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한미쇠고기 협상에 관여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 등은 이 보도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PD 수첩이 보도한 내용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지, 더 나아가 보도 내용의 진위를 형사 절차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권, 혹은 형사 절차는 모든 문제의 해결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정신에 비추어볼 때 형사법적 제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수사권의 발동은 비례성 및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내재적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이로부터 파생된 수사의 조건 이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 보도라고 하여 수사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실정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설혹 수사 결과 혹은 기소 후 재판 결과 범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 등) 수사나 형사재판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위에서 든 수사권의 내재적 한계나 그 밖의 이유로 수사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언론 보도를 하나의 범주에 넣고 수사권 행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보다 구체적인 보도 내용과 수사 이유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주제 발표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수사권의 한계에 관한 이론, PD 수첩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다.

2. 수사권 발동의 한계

(1) 형법의 비례성, 보충성의 원칙

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분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혹은 사회적 통제수단이 있을 때는 뒷전에 물러서야 한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는 가능한 한 덜 유해한 수단으로, 꼭 필요한 만큼 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형법의 비례성,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적 제재나 이를 전제로 한 수사권의 발동의 최후 수단으로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PD 수첩의 보도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반드시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사권의 발동을 통해서 보도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인권의 침해나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의 진위나 적정성이 문제될 때에는 민사 소송이나 행정적 규제 등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며 사실 규명 자체를 위한 강제수사권의 이용은 제한되어야 한다.

(2) 수사의 조건 이론¹⁾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무제한한 재량에 의해서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방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수사권의 발동에는 필요성과 상당성이라는 조건이 따르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다.

1) 수사의 조건 이론에 관하여는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제173면 이하를 참조한 것임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객관적인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사는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PD 수첩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권 발동의 적정성 검토

(1) 수사의 대상 문제

보도에 의하면 농림수산물식품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라고 한다. ①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광우병(vCJD)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② 주저앉은 소(downer)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③ 라면, 의약품, 화장품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주제발표문에 나타난 검찰의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공개자료 제출 요구>에 의하더라도 검찰은 위와 같은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수사 의뢰 내용 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 제6면 : 다우너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 내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점, 앵커가 다우너 소 동영상을 보고 “아까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다는 점, 다우너 소가 1차 검사 이후 쓰러지면 수의사가 재검사한다는 사실 등을 CNN 보도와 달리 생략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점, 빈슨 어머니 인터뷰 중 MRI 결과를 CJD라고 언급한 것을 생략한 이유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한 점,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한 점 등)

그러나 일단 위의 네 가지 수사 대상 중 ① 내지 ③은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위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허위보도는 어떠한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범죄가 아니며 따라서 수사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러한 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81년 워싱턴포스트의 자넷 쿡 기자가 썼던 “지미의 세계”라는 제목의

르포 기사이다. 이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왔고 쿡 기사는 폴리처상을 땀지만 기사에 등장하는 마약에 중독된 8세 소년인 “지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기사 내용은 허위로 밝혀졌다. 물론 도덕적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워싱턴포스트는 폴리처상을 반환해야 했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쿡 기사가 폴리처상을 위해 기사를 제출하고 상금을 받았다면 업무방해나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선정위원회에 기사를 제출한 것은 기사의 진위를 알지 못한 워싱턴포스트의 편집자 밥 우드워드였다). 수년전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미리 조작한 화면을 방영하면서 마치 야생동물의 생태를 찍은 것처럼 보도했던 경우에도 수사 기관이 나서지 않았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지만 단순한 허위보도로 인해서 수사의 대상이 된 일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도덕적 비난이나 방송심의위원회 등의 제재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PD 수첩의 보도 내용 중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적정성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 국민이 궁금해 하는 문제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라면스프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길을 끌고 시청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농림수산물부에서 수사를 의뢰한 근거는 명예훼손인데 이러한 사실의 진위는 농림수산물부 공무원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농림수산물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러한 보도 내용은 농림수산물부를 비판하는 것이며 일견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²⁾ 여기서의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³⁾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여기서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2)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제182면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⁴⁾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진위 판별이 가능한 사실이라기보다는 협상 경과나 결과에 대한 의견 혹은 가치판단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미국의 실정”에 대해 얼마나 세부적인 점까지 알고 있어야 “잘 알고” 협상했다고 할 수 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있을 때 “잘 모르고” 협상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의견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PD 수첩 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방법의 적정성 검토

(1) 원본자료 제출 요구

검찰은 PD 수첩 제작진에게 원본테이프를 비롯하여 원어 및 번역 대본 등 보도의 기초가 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가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설사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수 혹은 예비·음모죄를 처벌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송되지 않은 취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된다면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그 안에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따지면 될 것이다.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재된 자료 중 어떠한 부분을 취사선택해서 실제 방송에 내보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취재된 내용 중 어떤 부분을 방송하는가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 검증하려고 드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례의

4)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원칙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개적인 자료제출 및 해명 요구

주제발표문 내용대로 검찰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보류하고 PD 수첩 제작진에게 공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검찰이 당일 언론에 밝힌 내용은 단순한 자료 제출 요구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들이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지만 수사대상자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굳이 헌법 조항을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혐의에 대해 해명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소·고발, 수사의뢰 등으로 인해서 입건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확정까지는 혐의 내용도 가능한 한 공개되지 말아야 하며 형법이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인들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검찰이 자료제출 혹은 해명을 요구한 사항들은 애초에 농림수산물식품부 측에서 수사를 의뢰한 근거인 명예훼손의 범위를 넘어서 보도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것도 많은데 이는 수사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련의 편집과정과 충격적인 동영상을 첫 화면으로 하고 계속되는 인터뷰의 자막을 왜곡 처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표어가 적힌 포스터를 배경으로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정정을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다우너 소→광우병 소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고 의심이 된다”는 부분(주제발표문 제6면)이 이에 해당한다. 설사 “다우너 소→광우병 소 개념을 각인”시키는 것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보도일 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에 관한 규정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즉 혐의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혐의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공개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도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범죄혐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문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이렇듯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서 의견 대립을 해소하는지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설사 언론 보도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방식은 가장 신중하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고 수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도 내용의 진위 혹은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서 형사절차에 기대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수사를 통해서 PD 수첩의 보도 내용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 설사 검찰 수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문제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



김 정 대 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실장)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명백한 언론탄압

김 정 대 실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기획실장)

시청과 광화문 앞을 가득 메웠던 촛불이 사라지자 이명박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실정을 반성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공안정국을 형성하여 공포통치에 힘을 쏟고 있다.

미 쇠고기 수입 협상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실책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촛불 괴담’ 운운하며 미 소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제작진을 이례적으로 검찰 5인의 전담반까지 구성하며 수사했다.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이나 거짓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 잣대에 따른 논쟁만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탄압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고등학생, 네티즌, 유모차 부대 등 촛불집회와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검찰과 경찰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반복하고 있다. 이는 수사 대상자의 위법성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전개했던 네티즌의 구속 수사가 이뤄지자 이들의 활동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PD수첩>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결정 등 압력이 거세지자 MBC는

<PD수첩>제작진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과 기자의 자유로운 언론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여 정권에 비판하는 언론인과 네티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 관련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YTN,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TV, 위성방송 등의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법적 임기가 남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신입 사장으로 정권의 코드 인사를 단행했다. KBS 신입 사장은 사장 선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KBS 내부 구성원에 대해 보복인사를 강행했고 ‘시사투나잇’, ‘시사기획 째’,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폐지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낙하산 사장에 대한 YTN 노조의 방송의 정치적 독립 투쟁 대해 구분홍 사장은 전두환 정권 이래 최대인 6명의 해고를 포함하여 33인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식의 바탕위에서 <PD수첩>제작진의 검찰 수사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PD수첩>제작진의 검찰 수사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취재 사실의 진실과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에 대한 규명이나 검증이 아니다. 조중동이 ‘촛불괴담’이란 괴담을 만들어 내고 이런 여론 아닌 여론몰이에 힘입어 여당 추천인사가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머릿수로 밀어 붙인 징계결정에 따라 MBC 구성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결정으로 본사가 아닌 계열사에서 사과방송이 진행됐다. 철저한 검증이 아닌 힘에 의해서 <PD수첩>제작진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거짓말을 일삼으며 직업윤리도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론의 재판도 아닌 권력에 따른 시스템에 의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심판 뒤에 검찰 수사는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의 <PD수첩>제작진에 대한 수사는 분명한 언론탄압이다. 100일을 넘게 청계천, 시청광장, 광화문 일대를 메웠던 수십만의 촛불 시민은 왜곡, 거짓 보도를 일삼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폐간을 주장했다. 그리고 MBC <PD수첩>의 진실보도를 격려했다. 그런데 검찰은 조중동의 왜곡, 거짓 보도는 수사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던

<PD수첩>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 제작, 언론취재의 상식을 넘어선 법리적 잣대를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이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 그 의미와 쟁점

정책토론: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 인 쇄 | 2008년 10월

| 발 행 | 2008년 10월

| 발행인 | 안 경 환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 정책총괄팀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725 | F A X | (02) 2125-9733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